[별첨]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자)로 선정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 주택 특별공급 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청약업무수행 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문 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026.06.19.(예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가. 공급규모

1)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신문지구 A34-1블럭 일원

2)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5층, 13개동 총 1,379세대

3) 입주예정시기 : 2029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나. 공급세대

(단위 : ㎡,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총 공급 세대수	비고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084.7419A	84A	84.7419	24.7838	109.5257	56.0937	165.6194	916	
084.8435B	84B	84.8435	26.0314	110.8749	56.1608	167.0357	224	
113.7613A	113A	113.7613	26.4654	140.2267	75.3027	215.5294	191	
128.8099A	128A	128.8099	26.3684	155.1783	85.2638	240.4421	48	
합계							1,379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다. 기관별 특별공급 세대수 배분

(단위 : ㎡,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괄호안의 숫자는 예비입주자 세대수)	국가유공자		16(80)	4(20)	20(100)
	장기복무 제대군인		10(50)	2(10)	12(6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2(60)	3(15)	15(75)
	중소기업 근로자		26(130)	6(30)	32(160)
	장애인	경상남도	18(90)	5(25)	23(115)
		부산광역시	5(25)	1(5)	6(30)
		울산광역시	5(25)	1(5)	6(30)
		소 계	28(140)	7(35)	35(175)
	합 계		92(460)	22(110)	114(570)

※ 기관추천(일반)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표시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임(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입별 배정물량의 500% 범위에서 선정).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합니다.

2. 주택공급 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 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6.06.19.(금) (예정)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6.06.29.(월) 09:00~17:30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6.07.07.(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ome' 홈페이지
정당계약 기간	2026.07.18.(토) ~ 2026.07.20.(월) 10:00~16:00 (예정)	견본주택(경상남도 대청동 305-3번지)

※ 상기 일정은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정 대상자는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①공동인증서 또는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증서, ⑦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가능합니다.

3. 자격요건 및 당첨자 선정방법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td></tr>
<tr><td>추천기관</td><td>
<table>
<tr><th>구 분</th><th>관련법규</th><th>해당기관</th></tr>
<tr><td>국가유공자
[청약통장 불필요]</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td rowspan="2">국가보훈부
경남동부보훈지청 복지과</td></tr>
<tr><td>장기복무 제대군인</td><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tr>
<tr><td>장애인
[청약통장 불필요]</td><td>「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td>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td></tr>
<tr><td>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td>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tr>
<tr><td>중소기업근로자</td><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td>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td></tr>
</table>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td></tr>
</table>

<table>
<tr><td></td><td>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해시, 경상남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able>

4.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305-3번지
- 홈페이지 : https://www.i-park.com/sinmuncentral
- 분양문의 : 1600-1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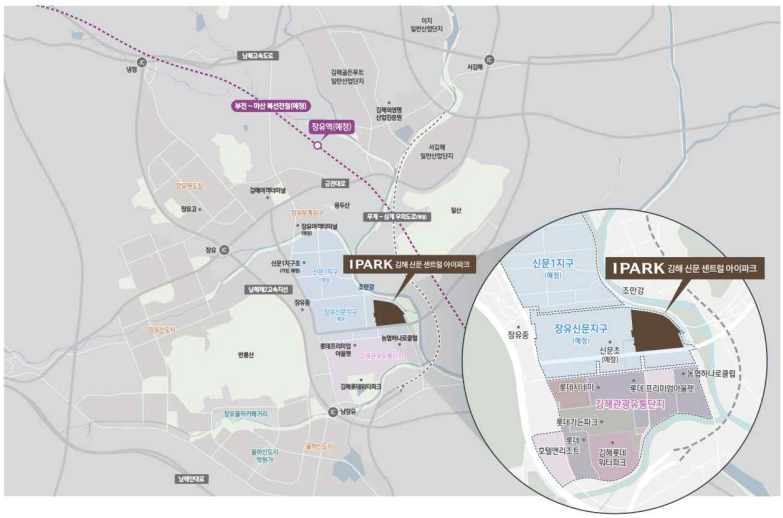
※ 참고자료

1. 투시도



※ 상기 투시도는 현장 이미지를 개략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단지레벨 ,주변 환경, 도로 선형, 주요시설물 등 실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반드시 현장방문 혹은 견본주택으로 내방하시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치도



※ 상기 사용된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도로, 학교, 공원 등 각종 개발 계획은 사업주체,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견본주택 약도

